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 심의 • 의결

**안건번호** 제2023-002-007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재)한국어린이안전재단

의결연월일 2023. 2. 8.

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9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2.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# 이 유

##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6930호, 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로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

#### < 일반현황 >

사업자등록번호	법 인 등 록 번 호
대표자 성명	설 립 일
사 업 장 주 소	
상시 종업원 수	법 인 성 격
주요 서비스	

#### < 최근 3년간 재무현황 >

	2019년	2020년	2021년	평균
전체 매출액				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( )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1. 개인정보 유출 개요

#### 가. 유출 항목 및 경위

- 이 (유출 경위) 피심인은 홈페이지( )\*에
   사업 최종 선정자를 공지하는

  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신청자와 자녀(총 2,412명)의 개인 식별정보(이름, 생년 월일) 파일(엑셀, PDF)을 첨부하였다.
- \* 웹페이지 주소:

○ (유출 규모) 신청자와 자녀의 이름, 생년월일 총 2,412명

#### 나. 경과 및 대응

일 시	유출 인지·대응 내용	비고		
'22. 9. 1.	경찰로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전달받음	유출 인지		
	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함			
	사업 대상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후 수정하여 재공지함 *	후속 조치		
<sup>,</sup> 22. 9. 20.	개인정보보호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	유출 신고		
'22. 11. 18.	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(문자), 홈페이지 공지	유출 통지		

#### 2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#### 가. 취급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○ 피심인은 홈페이지에 사업 대상자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마스킹 처리 없이 대상자(신청자와 자녀 총 2,412명)의 개인정보 파일(식별)을 게시하여 열람권하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었다.

#### 나.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를 지연한 행위

'22.9.1. 정보주체(2,412명)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 '22.11.18.정보주체에게 유출 통지하였다.

#### 다.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신고를 지연한 행위

'22.9.1. 정보주체(2,412명)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, '22.9.20.개인정보보호 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하였다.

#### 3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하였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

유출된 파일은 신청자의 정보(이름, 생년월일)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보(이름, 생년월일)가 함께 매칭되어 있어 이를 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.

#### 2. 취급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#### 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세부기준인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고시 제2021-2호)」제6조제3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,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, 업무용컴퓨터,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#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마스킹 처리 등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하여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은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및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# 3.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를 지연한 행위

#### 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<sup>1호</sup>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, <sup>2호</sup>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, <sup>3호</sup>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, <sup>4호</sup>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, <sup>5호</sup>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고시 제2020-1호) 제2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'22.9.1.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'22.11.18.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은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# 4.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신고를 지연한 행위

#### 가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3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한

규모 이상의 개인정보"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(고시 제2020-1호) 제2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나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이 '22.9.1.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(2,412명)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'22.9.20.에 유출 신고한 것은 보호법 제34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.

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,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·8·9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[별표2]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피심인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각 600만원씩, 총 1,800만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>

OUII-NOI	77 47	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
자.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	
처.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8호	600	1,200	2,400	
커.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9호	600	1,200	2,400	
합 계		1,800			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. 라.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#### 1. 일반기준
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 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은 과태료 부담능력이 낮은 비영리법인으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의도가 없었으며 위반행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심인은 위반행위 인지한 즉시 시정하였고 조사기간 중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등을 고려하여,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 기준금액(총 1,800만원)의 50%인 900만원을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#### 1. 일반기준
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,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	과태료 금액 (단위:만원)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 <del>준</del> 금액 (A)	가 <del>중</del> 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
제29조(안전조치의무)	제75조제2항제6호	600	-	300	300
제3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)제1항	제75조제2항제8호	600	-	300	300
제3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)제3항	제75조제2항제9호	600	-	300	300
합 계		1,800	-	900	900

<sup>※</sup>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## 2. 처분결과의 공표

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처분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, 제3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)제1항 및 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·8·9호와 제66조(결과의 공표)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3년 2월 8일

- 위원장 고학수 (서명)
- 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
- 위 원 강정화 (서명)
- 위 원 고성학 (서명)
- 위 원 백대용 (서명)
- 위 원 서종식 (서명)
- 위 원 염흥열 (서명)
- 위 원 지성우 (서명)